



의안번호	제 2011 - 15호
의 결 연 월 일	2011. 9. 16. (제 36 차 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41차 전체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4. 회의 요지	1
가. 공청회 및 팀별 대상범죄군 분장	1
나. 전문위원 연구과제의 팀별 분장	2
II. 1팀 회의	2
1. 제35차 회의	2
가. 일시·장소	2
나. 참석자	3
다. 주요 안건	3
라. 회의 요지	3
2. 제36차 회의	4
가. 일시·장소	4
나. 참석자	4
다. 주요 안건	5
라. 회의 요지	5
III. 2팀 회의	7
1. 제28차 회의	7
가. 일시·장소	8
나. 참석자	8

다. 주요 안건	8
라. 회의 요지	8
IV. 제42차 전체회의	11
1. 일시·장소	11
2. 참석자	11
3. 주요 안건	11
4. 회의 요지	12
가.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12
나.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15
다.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17
라.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17
V. 향후 일정	19
별첨 홍준호, “폭력범죄 양형기준 검토”	
강우예,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검토의견”	
이수정, “2011. 8. 22.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제1팀 회의 관련”	
이진국,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조석영, “폭력범죄군 대상 범죄 검토 자료”	
최진녕, “상해죄의 감경인자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개념에 관하여”	
정준화,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2011. 9. 5.)”	
김혜정,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의견”	
홍준호,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검토”	
조석영, “지식재산권 범죄군 대상 범죄 검토 자료”	
최진녕, “2011. 9. 5.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검토 보고서에 관	

한 의견”

심재철, “금융경제범죄군 양형기준 기초자료”

정준화,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2011. 9. 5.)”

심재철, “금융경제범죄군 유형 및 대상범위 검토”

I. 제41차 전체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11. 7. 19.(화) 16:30 ~ 18:3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강우예, 김혜정, 범현, 심재철, 이정훈, 이주원, 정준화, 조석영, 최진녕, 홍준호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공청회 및 팀별 대상범죄군 분장
- 전문위원 연구과제의 팀별 분장

4. 회의 요지

가. 공청회 및 팀별 대상범죄군 분장

(1) 공청회별 대상범죄 분장

- 5, 6차 공청회별 대상범죄군 분장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양형기준 초안 작성의 난이도, 범죄별 특성, 사건발생빈도, 죄질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장하는데 의견이 일치함

공청회	범죄군
5차 공청회	폭력, 교통, 지식재산권, 금융·경제범죄
6차 공청회	방화, 공갈, 조세, 선거범죄

(2) 팀별 대상범죄 분장

- 전문위원단 팀별 대상범죄군 분장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분장하는데 의견이 일치함

공청회	1팀	2팀
5차 공청회	폭력, 지식재산권	교통, 금융·경제
6차 공청회	공갈, 선거	방화, 조세

☞ 운영지원단에서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초자료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분석결과를 2011. 10. 중 양형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

나. 전문위원 연구과제의 팀별 분장

- 전문위원단 연구과제의 팀별 분장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분장하는데 의견이 일치함

팀	연구과제
1팀	집행유예 기준 개선방안
2팀	양형기준 실제 적용사례 분석

II. 1팀 회의

1. 제35차 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1. 8. 8.(월) 11:00 ~ 12:15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나. 참석자(8명)

- 홍준호(팀장), 강우예, 안효질, 이수정, 이진국, 조석영, 최진녕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

다. 주요 안건

- 폭력, 지식재산권 범죄의 주무 전문위원 선정
-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작성 방안에 관한 검토

라. 회의 요지

(1) 폭력, 지식재산권범죄의 주무 전문위원 선정

- 범죄군별로 복수의 주무 전문위원을 선정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 다음과 같이 범죄군별 주무 전문위원을 선정함

범죄군	주무 전문위원
폭력	이수정, 이진국, 홍준호
지식재산권	안효질, 최진녕, 홍준호
공갈	강우예, 이수정
선거	조석영

- 전문위원 연구과제의 주무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함

연구과제	주무 전문위원
집행유예 기준 개선방안	조석영

(2)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작성 방안에 관한 검토

- 상해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폭행치사상죄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결과를 중시하여 상해죄 양형기준의 설정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폭행죄 양형기준에 포함시켜 결과가 상해인 경우와 사망인 경우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유형분류의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상해 정도를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은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흉기 사용과 같은 범행 수단과 방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상습성 또는 범행동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존속상해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유형분류가 아닌 양형인자로만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2. 제36차 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1. 8. 22.(목) 16:30 ~ 18:40
- 장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나. 참석자(7명)

- 홍준호(팀장), 안효질, 이수정, 이진국, 조석영, 최진녕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

다. 주요 안건

-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에 관한 검토

라. 회의 요지

(1)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상습·누범상해는 행위자의 위험성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이고, 특수상해는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이므로 상습·누범상해는 특수상해와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더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이에 대하여 상습특수상해, 누범특수상해를 어느 유형에 포섭할 것인지 불분명하게 되므로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상습·누범상해만 별도로 구분하였다가 형법 개정으로 상습·누범이 폐지될 경우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상해치사(제3유형)와 상습·누범·특수상해(제4유형)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법정형이 동일하여 동일한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한다면 별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지 말고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자는 의견
 - 상해치사의 형량범위를 상습·누범상해의 권고 형량범위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1 내지 3유형은 결과를, 4유형은 상습성·전과·수법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데다가 4유형에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양형인자들

이 있으므로 설사 법정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별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공동상해의 별도 유형분류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의 권고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하자는 의견
 - 공동상해는 기본범죄 법정형의 1/2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특별가중인자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간명하다는 의견

- 특가법상 '보복 목적 상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초안과 같이 1유형으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보복 목적 상해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자는 의견
 - 범행 목적이라는 별도의 유형분류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 되어 유형분류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

(2) 공무집행방해와의 상상적 경합인 경우

-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상상적 경합인 경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공무집행방해범죄와 상해범죄의 양형인자표에 상상적 경합범죄의 양형인자를 규정하고 각각 도출된 권고 형량범위를 법관이 참고해서 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공무집행방해범죄에서는 상해의 양형인자를 규율하지 않고, 상해범죄에서는 공무집행방해의 양형인자를 규율하지 않은 채 각각 도출된 권고 형량범위를 법관이 참고해서 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의견

-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통일적 처리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3) 양형인자표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 분리하여 2개의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2개의 양형인자로 분리할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많아져 형이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상당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진지한 노력’의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피해회복의 노력을 주관적·망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1, 2기 양형기준과의 일관성을 해하게 되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

III. 2팀회의

1. 제28차 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1. 8. 12.(금) 17:00 ~ 18:30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나. 참석자(7명)

- 심재철(팀장), 김혜정, 이정훈, 이주원, 정순섭, 정준화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

다. 주요 안건

- 범죄군 및 연구과제별 주무 전문위원 선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관련 자료 검토
-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초안 관련 자료 검토

라. 회의 요지

(1) 범죄군 및 연구과제별 주무 전문위원 선정

- 5차 공청회 대상 범죄군의 주무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함

범죄군	주무 전문위원
금융·경제범죄	심재철, 정순섭, 정준화
교통범죄	김혜정, 정준화

- 전문위원 연구과제의 주무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함

연구과제	주무 전문위원
양형기준 실제 적용사례 분석	심재철, 이정훈, 정준화

(2)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초안 관련 자료 검토

- 금융·경제범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 관하여 이견이 없음
- 효율적인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설정 범위를 한정하거나 다음과 같이 범죄군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관련된 증권범죄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증재행위에 관련된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증권·금융범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자본시장법상 주요 증권범죄와 특경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증재, 알선수재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증권·특정경제범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서의 금융·경제범죄의 범위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음
-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44개에 이르는 금융 관련 법률을 모두 포섭하는 양형기준의 설정이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므로 불공정거래를 중심으로 한 **증권범죄만 한정**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특경법상 ‘사금융알선 등(제8조)’, ‘저축관련 부당행위(제9조)’는 발생빈도가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제20조 제1항)’는 횡령·배임범죄 등의 수단적인 성격이 강하고 실

제로 위 범죄와 경합범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독자적인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의견

- 회사범죄의 특수성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회사범죄는 금융·경제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회사범죄(또는 상법위반범죄)라는 별도의 범죄군에서 양형기준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형법상 배임수재, 공인회계사법상 배임수재, 특가법 및 변호사법상 알선수재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형법상 배임수재, 공인회계사법상 배임수재, 특가법 및 변호사법상 알선수재와 알선수리는 특경법상 수재, 알선수재와는 범행 주체,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다르므로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3)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관련 자료 검토

-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양형기준 설정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고, 구공판 비율이 약 3%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징역형 선고 사안은 집행유예 결정자 또는 2~3회의 동종전과자이며,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세분화함으로써 법률이 양형기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개정 법률이 아직 시행 전이므로 양형기준 설정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는 의견(다수 의견)
 -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발생빈도가 높고, 음주운전의 경우 개정 법률이 법정형을 세분화함으로써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낮다

하더라도 실행과 집행유예의 구분 기준이 필요하며, 2회 이상 동종전과자 및 음주측정거부자의 경우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소수 의견)

- 형법상 교통방해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범죄발생빈도, 국민적 관심이 낮으므로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사고범죄로 한정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다수의견)
 - 법정형이 높은 범죄가 있으므로 비록 범죄발생빈도가 낮다 하더라도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소수의견)

IV. 제42차 전체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11. 9. 5.(월) 16:00 ~ 20: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3명)

- 수석전문위원, 강우예, 김혜정, 범현, 심재철, 안효질, 이정훈, 이주원, 정준화, 조석영, 최진녕, 홍준호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4. 회의 요지

가.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1) 양형기준 설정 범위

- ① 상해죄, 존속상해죄의 미수범을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② 특가법상 보복 목적 상해·폭행·협박을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시키며, ③ 폭행치사상죄를 폭행범죄군에 포함시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데 이견이 없음

(2) 상해범죄의 유형분류

- 상습·누범·특수상해(4유형)의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상습·누범·특수상해를 1유형 내지 3유형과는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상습·누범·특수상해를 4유형으로 존치하고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상습·누범·특수상해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형량범위에 큰 차이가 없다면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 양형기초자료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보복 목적 상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일반상해에 비해 법정형이 높으므로 양형인자를 두 번 중복 평가

- 하는 등의 방식으로 형량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1유형에 포섭하고,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적절하다는 의견
 -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를 일정 비율로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

(3) 공무집행방해와의 상상적 경합의 처리 방법

-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의 구체적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방안		구체적 처리방법
[1안] 상상적 경합의 공통 처리기준 별도 규정 필요	[1-1안]	공집방 :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인자 <u>유지</u> 상해 : ‘공무집행방해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u>반영</u>
	[1-2안]	공집방 :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인자 <u>삭제</u> 상해 : ‘공무집행방해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u>반영x</u>
[2안] 상상적 경합의 공통 처리기준 별도 규정 반대	[2-1안]	공집방 :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인자 <u>삭제</u> 상해 : ‘공무집행방해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u>반영</u>
	[2-2안]	공집방 :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인자 <u>유지</u> 상해 : 공집방과 상·경인 경우 <u>상해 양형기준 적용x</u>
	[2-3안]	공집방 :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인자 <u>유지</u> 상해 : ‘공무집행방해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u>반영</u> ⇒ 각 양형기준 적용하여 도출된 형량범위 중 높은 하 한을 권고 형량범위 하한으로 사실상 참조
	[2-4안]	공집방 :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인자 <u>삭제</u> 상해 : ‘공무집행방해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u>반영x</u> ⇒ 각 양형기준 적용하여 도출된 형량범위 중 높은 하 한을 권고 형량범위 하한으로 사실상 참조

[2-1안]의 논거

- 형법총칙이 상상적 경합의 경우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한 죄인 상해죄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양형인자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의 죄수 규정과 독립된 새로운 기준을 양형위원회가 만드는 것은 위험
-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구체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 상상적 경합범의 중한 죄인 상해죄의 양형기준 부분을 찾아 볼 것이므로

상해죄에서 공무집행방해의 양형인자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

[2-3안]의 논거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중요한 양형인자로 작용하는데, 양 범죄의 양형인자표에서 모두 배제할 경우 적정하지 않은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
- 법정형이 낮은 공무집행방해의 권고 형량범위가 법정형이 중한 상해의 권고 형량범위보다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인자표에서 상해 관련 양형인자를 삭제할 필요는 없음
- 앞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양형에 중요한 범죄라면 계속 양형인자로 반영하려는 노력 필요

[2-4안]의 논거

- 공무집행방해와 살인죄, 공무집행방해와 준강도상해, 2인 이상의 상해와 같은 동종 상상적 경합 등 수많은 형태의 상상적 경합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상상적 경합의 경우를 양형인자표에 반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현행 양형기준에서도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공무집행방해와 일반상해 상호간에서만 특별히 상상적 경합범죄의 양형인자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존 양형기준 체계 및 형법 체계에 맞지 않아 일관성이 결여됨
- 현행 양형기준은 일정 범위의 형량구간 형태로 권고 형량을 제시하고, 양형인자표에 열거되지 않은 양형요소도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의 적정 형량을 선택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음

👉 논의결과, [1안]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상상적 경합범에 공통되는 처리방법을 도출해 내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2안]을 중심으로 계속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나.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1) 양형기준 설정 범위

- 교통방해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관하여 이견이 없음
- 도로교통법위반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의견	논거
제외 의견 (다수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고, 구공판 비율이 약 3%에 불과 - 징역형 선고 사안의 대부분은 집행유예 결정자 또는 2~3회의 동종전과자이고, 양형편차에 관한 문제제기도 거의 없음 - 개정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세분화함으로써 양형기준의 역할을 수행하고, 개정 법률이 아직 시행 전이므로 양형기준 설정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
포함 의견 (소수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발생빈도가 매우 높음 - 음주운전의 경우 개정 도로교통법이 법정형을 세분화함으로써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낮다 하더라도 실행과 집행유예의 구분 기준이 필요 - 2회 이상 동종전과자,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양형기준 설정 필요

☞ 논의 결과, 일단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경과를 지켜 본 후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논의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모아짐

(2)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범죄의 세부 유형분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2개 유형(치상 후 도주, 치사 후 도주) 분류안
 - 3개 유형(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도주, 치사 후 도주) 분류안

- 4개 유형(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도주, 치사 후 도주, 치사 후 유기도주) 분류안

👉 2팀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3) 양형인자

- 교통사고범죄 양형인자표의 가중인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또는 무면허운전은 특별가중인자로, 나머지 예외사유들은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교통사고범죄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체적 경합범을 양형인자로 반영할 경우, 단일범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해 온 양형기준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
 -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므로, 11개 예외사유를 동등하게 특별가중인자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11개 예외사유 중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등의 경우는 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 음주운전죄에서 이미 음주상태가 고려되었음에도 다시 교통사고 치사상의 양형인자로 반영하면, 단일한 사실 또는 양형인자가 양형에서 이중으로 평가되어 부당하다는 의견
 - 11개 예외사유에 중첩적으로 해당되는 경우와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하므로 단순

하게 처리하는 것은 부당할 수도 있다는 의견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만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경우, 무면허운전만 한 사안은 가중영역에서 출발하게 되는 데 반하여 과속,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까지 중첩된 사안은 기본영역에서 출발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

☞ 2팀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다.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초안 검토

-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권리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허위표시, 사위행위, 비밀누설행위 등을 제외하자는 의견
 - 비밀누설행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침해행위는 설정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
 - 특허권과 유사한 성격인 지리적 표시권을 인정한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를 설정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

☞ 1팀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라.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 초안 검토

(1) 범죄군 명칭의 변경 방안

- 경제범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삭제 또는 대체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견이 없고, 금융·경제범죄를 대체할 명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증권·금융범죄’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 ‘증권·특정경제범죄’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2) 양형기준 설정범위

- 증권범죄 중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이견이 없었으나, 그 밖의 증권범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불이행 및 공시위반죄,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상 분식회계, 회계정보 위·변조 및 감사보고서 허위기재, 상법상 주주총회 부실보고, 가장납입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 위 범죄들은 단일범으로 구공판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거의 없어 통계에 기초한 형량을 산출해 내기 어려워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

- 금융범죄 중 특경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증재범죄를 포함시키는 데 이견이 없었으나, 그 밖의 금융범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특경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 위 범죄들은 발생빈도가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등 범죄 및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부당거래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 위 범죄들 중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안들은 대부분 업무상 배임

죄와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경우이고 단일범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안은 별로 없거나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어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

- 금융범죄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형법상 배임수증재,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 금품수수, 특경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상 알선수재범죄도 설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 금융·경제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관하여는, 양형기초자료조사 결과가 나온 후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2팀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V.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43차 전체회의는 10. 24.에 개최하기로 함